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69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정희용·박덕흠·김선교

김상훈 • 박준태 • 서천호

김소희 • 박정하 • 이만희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 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빈번 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 워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 11).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1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 항에"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유치워 및 초등학교의 학생
- 2.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 권자인 학생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 5.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매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6.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학생
 -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 우
 -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60조의11(통학 략) <u><신 설></u>		(생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통학 지원을 하여야한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2.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및 제5조의2에 따른 기원대상자인 학생 5.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6.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기.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나.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이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다.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수

7.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제1항 및 제2항에-----

② <u>제1항에</u>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